

선	기관의 장
람	

시 G 보

제23호 2023. 6. 7.(수)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3-179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1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3-1255호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

광양시 공고 제2023-1256호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8

광양시 공고 제2023-1257호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33

광양시 공고 제2023-1258호 광양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48

광양시 공고 제2023-1273호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77

광양시 공고 제2023-1274호 공시송달공고 84

조 례

광양시 조례 제2015호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85

광양시 조례 제2016호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광양시 조례 제2017호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08

광양시 조례 제2018호 광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7

광양시 조례 제2019호 광양시 배안도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61
광양시 조례 제2020호 광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83
광양시 조례 제2021호 광양시 침수 방지지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86
광양시 조례 제2022호 광양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	191
광양시 조례 제2023호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194

규 칙

광양시 규칙 제911호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0
---	-----

회 람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 797-2323, 행정 2713)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7.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신원길 235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6. 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 물 번 호 부 여 1 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277-1, 280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신원길 235	20230607	20081001	법정리명에서 인용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 명 :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여 혼선 방지
- 체비지 매각대금 및 청산금 미납부시 가산금 부과기준을 완화하여 납부 독려

3. 주요내용

- 체비지 매각 관련 용어 정비
(제29조제1항제2호, 제33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 (현행) 계약보증금 (개정) 계약금
- 매매계약 해지 관련 용어 정비
(제33조제1항제6호)
⇒ (현행) 해약사유 (개정) 해지사유

○ 입찰방법 명확히 규정(제26조)

⇒ (현행) 전자입찰과 직접입찰 혼용하여 규정

(개정) (원칙)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예외) 시에서 직접 입찰

○ 체비지 매각대금 및 청산금 미납부시 가산금 부과기준 완화

(제31조제3항, 제46조제1항, 매매계약서 제8조)

⇒ (현행)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 (개정)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

4. 입법예고기간 : 2023. 6. 1. ~ 2023. 6. 21.(20일간)

5. 의견 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 (참조 : 택지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전남 광양시 행정2길 5, 5층 택지과(우편번호: 57785)

- 전 화: 061-797-3190

- 팩 스: 061-797-4173(팩스 송부 후 전화 요망)

- 전자우편: enfol492@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본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① 입찰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일반대출금리 연체 이자”를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해약사유”를 “해지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일반대출 금리의 연체이자”를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연이자 부과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광양시 공고 제 호

체비지 매각 공고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매각 방법에 따라 공고문의 내용은 수정 가능함

○ 매각재산(목록은 광양시 택지과에서 배부)

공 매 번 호	재 산 표 시	면 적 (m ²)	예 정 가 격	비 고

○ 매각방법 : 일반경쟁 입찰(필지별 매각)

○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 20 . . .

○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

○ 낙찰자 결정방법 : 필지별 예정가격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필지별로 입찰액에 대한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고일부터 입찰전일(20 . .)까지 광양시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입찰무효사항

가. 광양시 시금고에서 발행하는 현금 예치 증(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기)이외의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나. 입찰서에 공매번호, 입찰금액, 입찰보증금액, 주소,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하게 기재하였을 경우

다.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했을 경우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경우

마. 기타 입찰 무효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 계약체결

낙찰자는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광양시에 귀속 조치합니다.

○ 대금납부방법

가. 계약금은 토지대금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낙찰자의 당해 입찰보증금 사용가능)

나. 1차 중도금은 계약금을 포함한 계약금액의 40%를 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2차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금액의 30%납부하고, 잔금은 계약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계약금액의 30%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광양시에 귀속 한다.

○ 기타사항

가.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은 광양시청 내 입찰 장소에 게시합니다.

나. 매각 공고한 재산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입찰 전 체비지매각 공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 매각대상 토지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 보상, 명도에 관한 사항과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광양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관계법규 및 현장 등을 사전에 필히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응찰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광양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택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서식]

체비지 매매 계약서

토지의 표시 :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블록 롯트
(예상면적: m²)

위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광양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 을(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토지의 면적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면적으로 하고 추후 환지 확정처분에 의하여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갑”은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면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설정된 동명, 지번, 지목과 면적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갑”은 위 부동산 매도가격을 일금 원정으로 한다.

제3조 “을”은 매매대금 00원정을 다음과 같이 “갑”에게 분할납부하기로 한다.

1. 계약금은 계약금액의 10%이상 000원정(W 000)을 0000년 00월 00일 까지 납부한다.
2. 1차 중도금은 계약금을 포함한 계약금액의 40%인 000원정(W000)을 0000년 00월 00일까지
3. 2차 중도금은 계약금액의 30%인 000원정(W000)을 0000년 00월 00일까지
4. 잔금은 계약금액의 30%인 000원정(W000)을 0000년 00월 00일이내에 납부한다. 이 경우 납부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납부기로 한다.

제4조 “갑”은 사업이 완료되고 “을”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에 매각토지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①“을”은 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매,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② 계약 체결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6조 “을”이 제3조의 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3개월 이상 체납하였거나 제5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과 체결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7조 제1조에 따른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인하여 정산할 때에는 매매 계약 체결당시의 가격으로 정산한다.

제8조 “을”이 제3조의 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광양시 시금고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위 분양토지는 연약지반 성토, 절토 및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건축시 발생하는 제반비용과 제4조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 한다.

제10조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 본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매도인 (갑) 광 양 시 장 ①

매수인 (을) 주 소:
 성 명: ①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1호서식]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				처리 기간	
				14일	
재산의 표시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브릭 롯트 면적 m ²			
양 도 인	성 명	①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양 수 인	성 명	①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따른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①					
광 양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1통 (양도인) 2. 주민등록등본 (양수인) 3. 매매계약서 4. 취득세 영수증 사본					

[별지 제13호서식]

체비지사용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접수일자	20		접수부서			
신청종목	토지대금납부증명	토지사용승낙	사용목적		통수	
토지표시	지구 브럭 롯트			수수료		
사 용 자	주 소		공부대조자	담당자		통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조건 : 금회 사용 승낙신청한 면적은 환지처분 전까지 예정지 면적의 변경으로 인한 법정 건폐율, 용적률 초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정지면적의 9할미만을 사용하며, 연접토지와 지적 경계로부터 1m 이내에는 건축을 계획하지 않는 조건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3호서식]

납 부 서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취급처	광양시 택지과		
N O		지구명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수입		
납부토지	동	번지	
납 부 자			
일 금	원 금 연체료 계	원 원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일부인			

※납부장소:

영수필통지서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취급처	광양시 택지과		
N O		지구명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수입		
납부토지	동	번지	
납 부 자			
일 금	원 금 연체료 계	원 원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광 양 시 장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귀하			
수납일부인			

※납부장소:

영 수 증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취급처	광양시 택지과		
N O		지구명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수입		
납부토지	동	번지	
납 부 자			
일 금	원 금 연체료 계	원 원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자 인	

※납부장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환지설계의 계산) ① (생략)	제5조(환지설계의 계산)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6조(입찰방법) ① 입찰자는 제2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후 입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지정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제26조(입찰방법) ① 입찰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자를 대상으로 지정 기일내 필지별 입찰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한 후, 해당 필지별 토지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결정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낙찰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삭 제>
제29조(계약체결) ① 일반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 호	제29조(계약체결) ① ----- -----

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생략)

2.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광양시(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②·③ (생략)

제31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정한 기일내 매각토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금고 일반대출금리 연체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생략)

⑤ 체비지 내의 주거용 기존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건물소유자가 매수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

1. (현행과 같음)

2. ----- 계약
금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

④ (현행과 같음)

⑤ -----

-----.

다만,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u>계약보증금</u>은 광양시에 귀속 한다.	----- ----- ----- <u>계약금</u>----- -----.
제33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그 밖에 시장이 <u>해약사유</u>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그 <u>계약보증금</u>은 광양시에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세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과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3조(계약해지)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 <u>해지사유</u>----- ----- ② ----- ----- ----- <u>계약금</u>----- ----- ----- ----- -----.
제46조(이자 등의 징수) ① 징수 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일까지 시금고 <u>일반대출 금리의 연체이자</u>를 가산 징수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6조(이자 등의 징수) ① ----- ----- ----- ----- <u>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u>----- -----. ② (현행과 같음)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 명 :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여 혼선 방지
- 체비지 매각대금 및 청산금 미납부시 가산금 부과기준을 완화하여 납부 독려

3. 주요내용

- 체비지 매각 관련 용어 정비
(제29조제1항제2호, 제33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 (현행) 계약보증금 (개정) 계약금
- 매매계약 해지 관련 용어 정비
(제33조제1항제6호)
⇒ (현행) 해약사유 (개정) 해지사유

○ 입찰방법 명확히 규정(제26조)

⇒ (현행) 전자입찰과 직접입찰 혼용하여 규정

(개정) (원칙)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예외) 시에서 직접 입찰

○ 체비지 매각대금 및 청산금 미납부시 가산금 부과기준 완화

(제31조제3항, 제46조제1항, 매매계약서 제8조)

⇒ (현행)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 (개정)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

4. 입법예고기간 : 2023. 6. 1. ~ 2023. 6. 21.(20일간)

5. 의견 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 (참조 : 택지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전남 광양시 행정2길 5, 5층 택지과(우편번호: 57785)

- 전 화: 061-797-3190

- 팩 스: 061-797-4173(팩스 송부 후 전화 요망)

- 전자우편: enfol492@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본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① 입찰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를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해약사유”를 “해지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일반대출 금리의 연체이자”를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연이자 부과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광양시 공고 제 호

체비지 매각 공고(제25조 관련)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매각 방법에 따라 공고문의 내용은 수정 가능함

○ 매각재산(목록은 광양시 택지과에서 배부)

공 매 번 호	재 산 표 시	면 적 (m ²)	예 정 가 격	비 고

○ 매각방법 : 일반경쟁 입찰(필지별 매각)

○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 20 . . .

○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

○ 낙찰자 결정방법 : 필지별 예정가격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필지별로 입찰액에 대한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고일로부터 입찰전일(20 . . .)까지 광양시금고에 예치해야 합니다.

○ 입찰무효사항

가. 광양시금고에서 발행하는 현금 예치증(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기)이외의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나. 입찰서에 공매번호, 입찰금액, 입찰보증금액, 주소,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하게 기재하였을 경우

다.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했을 경우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미만일 경우

마. 기타 입찰 무효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 계약체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조치합니다.

○ 대금납부방법

가. 계약금 토지대금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해야 합니다.(낙찰자의 당해 입찰보증금 사용가능)

나. 1차 중도금은 계약금을 포함한 계약금액의 40%를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2차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금액의 30%납부,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계약금액의 30%를 납부해야 한다.

다.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월 이상 체납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광양시에 귀속조치 한다.

○ 기타사항

가.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은 광양시청 내 입찰 장소에 게시합니다.

나. 매각 공고한 재산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입찰 전 게시공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 매각대상 토지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 보상, 명도에 관한 사항과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우리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관계법규 및 현장 등을 사전에 필히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응찰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우리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택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비지 매매 계약서(제29조 관련)

토지의 표시 :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블록 롯트
(예상면적: m²)

위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광양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 을(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토지의 면적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면적으로 하고 추후 환지 확정처분에 의하여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갑”은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면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설정된 동명, 지번, 지목과 면적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조 “갑”은 위 부동산 매도가격을 일금 원정으로 한다.

제3조 “을”은 매매대금 00원정을 다음과 같이 “갑”에게 분할납부하기로 한다.

1. 계약금은 계약금액의 10%이상인 000원정(W 000)을 0000년 00월 00일 까지 납부한다.
2. 1차 중도금은 계약금을 포함한 계약금액의 40%인 000원정(W000)을 0000년 00월 00일까지
3. 2차 중도금은 계약금액의 30%인 000원정(W000)을 0000년 00월 00일 까지
4. 잔금은 계약금액의 30%인 000원정(W000)을 0000년 00월 00일이내에 납부한다. 이 경우 납부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납부하기로 한다.

제4조 “갑”은 사업이 완료되고 “을”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에 매각토지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 ①“을”은 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매,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② 계약 체결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6조 “을”이 제3조의 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3월 이상 체납하였거나 제5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과 체결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7조 제1조에 의한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인하여 정산할 때에는 매매 계약 체결당시의 가격으로 정산한다.

제8조 “을”이 제3조의 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광양시금고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9조 위 분양토지는 연약지반 성토, 절토 및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건축시 발생하는 제반비용과 제4조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 한다.

제10조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광양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1조 본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매도인 (갑) 광 양 시 장 ①인

매수인 (을) 주 소:
 성 명: ①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1호서식]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제32조 관련)				처리 기간	
				14 일	
재산의 표시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브릭 롯트 면적 m ²			
양 도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양 수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의한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신청인(양수인) ㉠ 광 양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1통 (양도인) 2. 주민등록등본 (양수인) 3. 매매계약서 4. 취득세 영수증 사본					

[별지 제13호서식]

체비지 사용 신청서(제32조 관련)

					처리기간	
					30일	
접수일자	20		접수부서			
신청종목	토지대금납부증명	토지사용승낙	사용목적		통수	
토지표시	지구 브럭 롯트			수수료		
사 용 자	주 소		공부대조자	담당자	통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조건 : 금회 사용 승낙신청한 면적은 환지처분 전까지 예정지 면적의 변경으로 인한 법정 건폐율, 용적률 초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정지면적의 9할미만을 사용하며, 연접토지와 지적 경계로부터 1m 이내에는 건축을 계획하지 않는 조건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3호서식]

납 부 서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취급처	광양시 택지과		
N O		지구명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수입		
납부토지	동	번지	
납 부 자			
일 금	원 금 연체료 계	원 원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일부인			

※납부장소:

영수필통지서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취급처	광양시 택지과		
N O		지구명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수입		
납부토지	동	번지	
납 부 자			
일 금	원 금 연체료 계	원 원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광 양 시 장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귀하			
수납일부인			

※납부장소:

영 수 증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취급처	광양시 택지과		
N O		지구명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수입		
납부토지	동	번지	
납 부 자			
일 금	원 금 연체료 계	원 원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자 인	

※납부장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환지설계의 계산) ① (생략)	제5조(환지설계의 계산)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6조(입찰방법) ① 입찰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후 입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지정기간 내에 접수해야 한다.	제26조(입찰방법) ① 입찰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정 기일내 필지별 입찰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한 후, 해당 필지별 토지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결정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낙찰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삭 제>
제29조(계약체결) ① 일반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 호	제29조(계약체결) ① ----- -----

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생략)

2.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광양시(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②·③ (생략)

제31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금고 일반대출금리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⑤ (생략)

제33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그 밖에 시장이 해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

-----.

1. (현행과 같음)

2. ----- 계약금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일반신용대출평균금리-----.

④·⑤ (현행과 같음)

제33조(계약해지)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 해지사유-----

② -----

되었을 경우, 그 <u>계약보증금</u>은 광양시에 귀속되며, 도시개발사 업 업무 주관 부서장은 세무담 당 부서에 과세 참고자료를 송 부해야 한다. 제46조(이자 등의 징수) ① 징수 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일까지 시 금고 <u>일반대출 금리의 연체이자</u> 를 가산 징수할 수 있다. ② (생략)	----- <u>계약금</u>----- ----- ----- ----- -----. 제46조(이자 등의 징수) ① ----- ----- ----- --- <u>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u>--- -----. ② (현행과 같음)
--	--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 명 :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여 혼선 방지
- 체비지 매각대금 및 청산금 미납부시 가산금 부과기준을 완화하여 납부 독려

3. 주요내용

- 체비지 매각 관련 용어 정비
(제29조제1항제2호, 제33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 (현행) 계약보증금 (개정) 계약금
- 매매계약 해지 관련 용어 정비
(제33조제1항제6호)
⇒ (현행) 해약사유 (개정) 해지사유

○ 입찰방법 명확히 규정(제26조)

⇒ (현행) 전자입찰과 직접입찰 혼용하여 규정

(개정) (원칙)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예외) 시에서 직접 입찰

○ 체비지 매각대금 및 청산금 미납부시 가산금 부과기준 완화

(제31조제3항, 제46조제1항, 매매계약서 제8조)

⇒ (현행)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 (개정)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

4. 입법예고기간 : 2023. 6. 1. ~ 2023. 6. 21.(20일간)

5. 의견 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 (참조 : 택지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전남 광양시 행정2길 5, 5층 택지과(우편번호: 57785)

- 전 화: 061-797-3190

- 팩 스: 061-797-4173(팩스 송부 후 전화 요망)

- 전자우편: enfol492@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본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입찰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를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해약사유”를 “해지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일반대출 금리의 연체이자”를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연이자 부과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체자를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광양시 공고 제 호

체비지 매각 공고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매각 방법에 따라 공고문의 내용은 수정 가능함

○ 매각재산(목록은 광양시 택지과에서 배부)

공 매 번 호	재 산 표 시	면 적 (㎡)	예 정 가 격	비 고

○ 매각방법 : 일반경쟁 입찰(필지별 매각)

○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 20 . . .

○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

○ 낙찰자 결정방법 : 필지별 예정가격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필지별로 입찰액에 대한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고일로부터 입찰전일(20 . . .)까지 광양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입찰무효사항

가. 광양시금고에서 발행하는 현금 예치증(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기)이외의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나. 입찰서에 공매번호, 입찰금액, 입찰보증금액, 주소,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하게 기재하였을 경우

다.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했을 경우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미만일 경우

마. 기타 입찰 무효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 계약체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광양시에 귀속 조치합니다.

○ 대금납부방법

가. 계약금은 토지대금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낙찰자의 당해 입찰보증금 사용가능)

나. 1차 중도금은 계약금을 포함한 계약금액의 40%를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2차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금액의 30%납부,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계약금액의 30%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월 이상 체납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광양시에 귀속조치 한다.

○ 기타사항

가.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은 광양시청 내 입찰 장소에 게시합니다.

나. 매각 공고한 재산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입찰 전 게시공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 매각대상 토지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 보상, 명도에 관한 사항과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우리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관계법규 및 현장 등을 사전에 필히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응찰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우리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택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서식〕

체비지 매매 계약서

토지의 표시 : 광양시 와우지구 블록 롯트
(예상면적: m²)

위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광양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토지의 면적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면적으로 하고 추후 환지 확정처분에 의하여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갑”은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면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설정된 동명, 지번, 지목과 면적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갑”은 위 부동산 매도가격을 일금 원정으로 한다.

제3조 “을”은 매매대금 00원정을 다음과 같이 “갑”에게 분할납부하기로 한다.

1. 계약금은 계약금액의 10%이상인 000원정(₩ 000)을 0000년 00월 00일 까지 납부한다.
2. 1차 중도금은 계약금을 포함한 계약금액의 40%인 000원정(₩000)을 0000년 00월 00일까지
3. 2차 중도금은 계약금액의 30%인 000원정(₩000)을 0000년 00월 00일 까지
4. 잔금은 계약금액의 30%인 000원정(₩000)을 0000년 00월 00일이내에 납부한다. 이 경우 납부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납부키로 한다.

제4조 “갑”은 사업이 완료되고 “을”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에 매각토지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①“을”은 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매,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② 계약 체결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6조 “을”이 제3조의 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3월 이상 체납하였거나 제5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7조 제1조에 의한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인하여 정산할 때에는 매매 계약 체결당시의 가격으로 정산한다.

제8조 “을”이 제3조의 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광양시금고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위 분양토지는 연약지반 성토, 절토 및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건축시 발생하는 제반비용과 제4조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 한다.

제10조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광양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1조 본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매도인 (갑) 광 양 시 장 ①인

매수인 (을) 주 소:
 성 명: ①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1호서식]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				처리 기간	
				14일	
재산의 표시		광양시 와우지구 브릭 롯트 면적 m ²			
양 도 인	성 명	①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양 수 인	성 명	①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의한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① 광 양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1통 (양도인) 2. 주민등록등본 (양수인) 3. 매매계약서 4. 취득세 영수증 사본					

체비지사용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접수일자	20 . . .		접수부서			
신청종목	토지대금납부증명	토지사용승낙	사용목적		통수	
토지표시	지구 브릭 롯트			수수료		
사 용 자	주 소		공부대조자	담당자		통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조건 : 금회 사용 승낙신청한 면적은 환지처분 전까지 예정지 면적의 변경으로 인한 법정 건폐율, 용적률 초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정지면적의 9할미만을 사용하며, 연접토지와 지적 경계로부터 1m 이내에는 건축을 계획하지 않는 조건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3호서식]

납 부 서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취급처	광양시 택지과		
N O		지구명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수입		
납부토지	동	번지	
납 부 자			
일 금	원 금 연체료 계	원 원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수납일부인			

※납부장소:

영수필통지서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취급처	광양시 택지과		
N O		지구명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수입		
납부토지	동	번지	
납 부 자			
일 금	원 금 연체료 계	원 원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광 양 시 장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귀하			
수납일부인			

※납부장소:

영 수 증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취급처	광양시 택지과		
N O		지구명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수입		
납부토지	동	번지	
납 부 자			
일 금	원 금 연체료 계	원 원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자 인	

※납부장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환지설계의 계산) ① (생략)	제5조(환지설계의 계산)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6조(입찰방법) ① 입찰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후 입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지정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제26조(입찰방법) ① 입찰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정 기일내 필지별 입찰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한 후, 해당 필지별 토지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결정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낙찰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삭 제>
제29조(계약체결) ① 일반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 호	제29조(계약체결) ① ----- -----

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생략)

2.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광양시(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②·③ (생략)

제31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금고 일반대출금리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⑤ (생략)

제33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그 밖에 시장이 해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

-----.

1. (현행과 같음)

2. ----- 계약금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일반신용대출평균금리-----.

④·⑤ (현행과 같음)

제33조(계약해지)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 해지사유-----

② -----

되었을 경우, 그 <u>계약보증금</u>은 광양시에 귀속되며, 세무담당 부서에 과세 참고자료를 송부하 여야 한다. 제46조(이자 등의 징수) ① 징수 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일까지 시 금고 <u>일반대출 금리의 연체이자</u> 를 가산 징수할 수 있다. ② (생략)	----- <u>계약금</u>----- ----- ----- -----. 제46조(이자 등의 징수) ① ----- ----- ----- --- <u>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u>--- -----. ② (현행과 같음)
--	---

광양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 명 : 광양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인용한 조문 정비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근거 조문 오류 표기 정비
(안 제4조, 제10조제1호, 제38조제1항, 제104조, 제117조제1항, 제122조제1항)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용어 정비
: “개서” → “고쳐 쓰다”, “내지” → “~부터~까지”, “당해” → “해당”, “수불” → “출납”, “익월” → “다음 달”, “익일” → “다음 날”, “익년도” → “다음 연도”, “의한다” → “따른다”, “기장” → “기록”
 - 띄어쓰기 및 두음법칙에 따른 정비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 인용하는 있는 법령을 현재의 법령으로 정비

: “정부 공문서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관용적 표현 등 정비

4. 입법예고기간 : 2023. 6. 1. ~ 2023. 6. 21.(20일간)

5. 의견 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 (참조 : 택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전남 광양시 행정2길 5, 5층 택지과(우편번호: 57785)
- 전 화: 061-797-3190
- 팩 스: 061-797-4173(팩스 송부 후 전화 요망)
- 전자우편: enfol492@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본문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영개발사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광양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제13조제2호 본문 중 “매월말”을 “매월 말”로 한다.

제22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월말, 당해월”을 “매월 말, 해당 월”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9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영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4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을 “(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4항 중 “기장한다”를 각각 “기록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사업”을 “해당사업”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자는 공영개발에 관한 보상비 등을 시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한다.

제53조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를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및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를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 유가증권)반환청구서”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및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61조 중 “(및 유가증권) 출납원은 유가증권은”을 “(유가증권) 출납원은 유가증권의”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매회계년도말”을 “매 회계연도 말”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및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으로, “망실하였을”을 “분실하였을”으로, “망실경위”를 “분실한 경위”로, “망실된”을 “분실한”으로 한다.

제64조 중 “인수한”을 “인수자”로 한다.

제67조 중 “제64조 내지 제66”을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한다.

제6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행해는”을 “대행하는”으로 한다.

제6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7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세입금 내역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및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1호 내지 제6호에”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83조제3항 중 “수불상황”을 “출납상황”으로, “보조수불장부”를 “보조출납장부”로 한다.

제85조 중 “익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87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94조제1항 중 “매사업년도말”을 “매 사업년도 말”로 한다.

제95조 중 “제94조 제1항”을 “제94조제1항”으로, “수불”을 “출납”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연도말”을 “연도 말”로, “익년도”를 “다음 연도”로, “제94조 제3항”을 “제94조제3항”으로 한다.

제98조의 제목 “(손·망실 보고 및 처리)”를 “(손·분실 보고 및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망실 및”을 “분실 및”으로, “손·망실보고서”를 “손·분실보고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손·망실”을 “손·분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손·망실자가 법 제48”을 “손·분실자가 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손·망실자”를 “손·분실자”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수불사항”을 “출납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익월”을 “재고자산출납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로 한다.

제100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4조 중 “규칙 제10조제1항”을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05조 중 “당해 고정자산”을 각각 “해당 고정자산”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14조제2항제8호 중 “익년도중”을 “다음 연도 중”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 중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조제4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년내지 5년간의 회수실적, 당해”를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실적, 해당”으로 한다.

제121조 중 “「광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한다”를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정부 공문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생략)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현행 제1항과 같음)
제4조(준용규정) <u>공영개발사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법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u>	제4조(준용규정) <u>공영개발사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광양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u>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u>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 ----- ----- ----- ----- ----- <u>. 이 경우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	제10조(장부의 종류) -----

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가. 총계정원장(별지 제1호서 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 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 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 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 서식) 사.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 호서식) 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생략)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 1.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 (현행과 같음)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 -----.
--	--

1. (생략)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u>매월말</u>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년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3. (생략)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u>의거</u>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이월) ①관리자는 <u>법 제30조의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관리자는 영 제21조제1	1. (현행과 같음) 2. ----- ----- <u>매월</u> <u>말</u>-----. ----- ----- -----. 3. (현행과 같음) 제22조(예산안의 작성) ----- ----- <u>따라</u> ----- ----- ----- ----- -----. 제25조(예산의 이월) ①----- <u>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u> ----- ----- ----- ----- -----.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	--

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을 작성,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당해 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6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6. (생략)

제29조(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따라

②

매월 말, 해당 월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1. ~ 6. (현행과 같음)

제29조(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의거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
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①
공영개발사업의 수입은 영 제30
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현
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
치되어 있을 때 당해 금융기관
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
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 (생략)

②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
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
란을 기장한다.

③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
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

따라 -----
-----.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①
----- 영 제34
조의 규정에 따른 -----

-----.

②-----

----- 해당 -----

-----.

제40조(----- 기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록한다.

③-----

을 출납취급금융 기관의 당해사
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④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
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장한다.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
· ② (생 략)

③제2항에 의한 과오납금은 당
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지난해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
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
에 계상·정리한다.

제44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
절차 및 기록) ①·② (생 략)

③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
서(별지 제27호 서식)또는 준공
검사 조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 해당사
업 -----
-----.

④-----

----- 기록한다.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해
당연도-----

-----.

제44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
절차 및 기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기록-----.

④ (생 략)

제48조(수표의 정정 등) ① (생 략)

②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선을 2줄로 긋고, 그 윗측에 정서하고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서손, 오손 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수표에 붉은사선을 그어“폐지”라고 붉은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①관리자는 공영개발에 관한 보상비등을 시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으며, 시의 교부자금 출납원은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60조에 의한다.

②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 교부통지서(별지 제30호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수표의 정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
당 -----

-----.

③-----
----- 해당 -----

-----.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①관리자는 공영개발에 관한 보상비등을 시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서식)에 의하여 <u>당해</u> 분임기업 출납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 <u>해당</u>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 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 부자금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 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u>제34조</u> 의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 ----- ----- ----- <u>제35조</u> -----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53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 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 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2호 서식)를 발부하여 <u>당해</u>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단,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여 입정리하여야 한다.	제53조(반납금의 여입절차) ---- ----- ----- ----- ----- ----- <u>해당</u> ----- -----. ----- ----- ----- -----.
제54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 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의한 채 무소멸의 경우에는 <u>당해</u> 채무의	제54조(채무면제 등) ----- ----- ----- <u>해당</u> -----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
다.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
차)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
고자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별지 제33호 서식)에 따
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
권) 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
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
납부에 기록·정리한다.

③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은 세
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해 수령증을
징수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
절차) ① (생략)
②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
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
차) ①-----
----- 세입세출외현금
(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

---.

②-----(유가증권) -

-----.

③----- 세
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 유가증
권)반환청구서-----

-----.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유가증권) ---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 출납원은 유가증권은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임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

③ (현행과 같음)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유가증권) 출납원은 유가증권의 -----

-----.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 매 회계연도 말 -----

----- 해당 -----

-----.

②-----

----- 해당 -----

-----.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지출원, 수입원, 자산출
 납원,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
 증권) 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
 에게 망실경위를 보고 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
 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
 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
 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 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
 공무원이 법 제48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② (생 략)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
 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한(후
 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7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
 무인계)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
 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처리) ①-----
 -----(유가증
 권) -----

 ----- 분실하였을-----

 ----- 분실한 경위-----
 ----- 분실한 -----

 -----.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

 ----- 인수자-----
 -----.

제67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
 무인계) -----

인계사무는 <u>제64조 내지 제66의</u>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 <u>제64조부터 제66조</u> <u>까지</u> -----.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①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u>대행해는</u> 금융기관	2. ----- ----- -- <u>대행하는</u>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 가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고 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 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 ----- ----- ----- -----.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와 <u>당해</u>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1. ----- -- <u>해당</u> ----- -----.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u>당해</u> 금융 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 다.	2. ----- ----- <u>해당</u> ----- ----- --.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분임기업 출납원, <u>당해</u> 금융기관이 4자	3. ----- ----- ----- <u>해당</u> -----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73조(장부의 비치) ①·② (생략) ③수납취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 내역장 ④ (생략) 제76조(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제79조(일계표·월계표) ①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43호 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 일계표(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달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등) <u>규칙</u>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제73조(장부의 비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세입금 내역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76조(수표지급의 거부) -----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1. ~ 6. (현행과 같음) 제79조(일계표·월계표) ①----- ----- ----- ----- ---(<u>유가증권</u>)----- ----- ----- -----.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등) <u>시행</u> <u>규칙</u> 제2-----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의 재고자산 - 제1호 내 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7. ----- 제1호부터 제6호까지 ----- -----.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 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 다.	③ ----- ----- 출 납상황----- 보조출납장부-----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 납원은 매 사업년도 말일 현재 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 액, 재고증감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재고 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 ----- ----- ----- ----- ----- 다음 연도 ----- -----.
제87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 담당공무원의 청구에 의거 계약 서 부분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7조(입고절차) ----- ----- ----- 따라 ----- ----- ----- -----.

제94조(재고조사) ①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말에 재고자산에 대
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95조(실사의 입회) 제94조 제1
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
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
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
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 시켜야 한다.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①
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
조사일후 5일이내에(연도말 재
고조사의 경우는 익년도 1월 8
일까지) 제94조 제3항의 재고조
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8조(손·망실 보고 및 처리)
①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없이
손·망실보고서(별지 제48호 서
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제94조(재고조사) ①-----
매 사업년도 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5조(실사의 입회) 제94조제1항

-- 출납-----
-----.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①

-----연도 말 --
----- 다음 연도 ---
----- 제94조제3항-----

-----.

② (현행과 같음)

제98조(손·분실 보고 및 처리)
① --- 분실 및 -----

손·분실보고서-----

-----.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②손·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③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④제2항 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 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99조(월말보고 등) ①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

----- 분
실 -----
--.

②손·분실 -----

-----.

1. ~ 10. (현행과 같음)

③-----

----- 손·분실자가
법 제48조 -----

-----.

④-----
----- 손
· 분실자-----

-----.

제99조(월말보고 등) ①-----

----- 출납
사항-----
-----.

②----- 재고자

<u>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u> 제100조(기부채납자산회계처리방법) 기부채납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u>당해</u>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101조(건설가계정) 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u>당해</u>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04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u>규칙 제10조제1항</u> 단서규정에 의거 규격이나 용도 성능이 동일한 고정자산이 동일목적으로 다량사용되는 경우 매년 거의 비슷한 정도로 대체가 행하여지는 자산은 환치자산으로 구분하고 매년 대체하는데 필요한 자산가액을 수선비로 처리하여 감	<u>산출납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u> ----- ---. 제100조(기부채납자산회계처리방법) ----- ----- <u>해당</u> ----- -----. 제101조(건설가계정) ① ----- ----- ----- <u>해당</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4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u>시행규칙 제20조제1항</u>----- ----- ----- ----- ----- ----- ----- -----
--	--

가상각을 대신할 수 있다.	----- -.
제105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간 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 부서 또는 자 산출납원이 고정자산 전용신청 서(별지 제51호 서식)를 기업출 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 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u>당 해 고정자산</u> 사용부서 및 전용 요청부서에 전용지시서(별지 제 52호 서식)를 발행하여 <u>당해 고 정자산을</u> 인도, 인수케 하여야 한다.	제105조(고정자산의 전용) ----- ----- ----- ----- ----- ----- <u>해 당 고정자산</u> ----- ----- ----- <u>해당 고정자산</u> -- -----.
제107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① 건설공사에 의한 발생고정자산 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생 략)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 하여 발생자산은 평가하여 평 가조서와 <u>당해</u> 고정 자산대장 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 (생 략) ②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별표1)에 의하되 단	제107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 ----- <u>해당</u> ----- -----. 3. (현행과 같음) ②----- -----

위 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109조(고정자산처분 등) ①고정자산의 폐기는 당해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②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서 송부한다.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① (생략)

②공영개발사업의 매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 해당 -----

-----.

제109조(고정자산처분 등) ①-----
----- 해당 -----

-----.

②-----

-- 해당 -----

-----.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7. (현행과 같음)

8. <u>익년도중</u> 상환예정인 고정부 채의 유동부채 대체	8. <u>다음 연도 중</u> ----- -----
9. (생략)	9. (현행과 같음)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관 리자는 <u>영 제4조제4항의 규정</u> 에 <u>의한</u>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필 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 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 ---- <u>영 제6조제4항의</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 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u>3년내지</u> <u>5년간의 회수실적</u> , 당해 미수금 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 여야 한다.	③----- ----- <u>3년부터</u> <u>5년까지의 회수실적</u> , 해당 ---- ----- -----.
제121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 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없 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은 「 <u>광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 정보증조례</u> 」에 의한다.	제121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 증) ----- ----- ----- -- 「 <u>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u> 」에 따른다.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 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전 ·편철·대출 및 복사는 <u>정부 공문서 규정</u> 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 ----- ----- 「 <u>행 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u> 」에 따른다.

② (생략)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따른다.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광양시장

1. 제정이유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양시와 디지털 광양시민 간의 상생발전과 도농교류 촉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격 (안 제3조)

나. 등록(안 제4조)

다. 제도의 운영(안 제5조)

라. 혜택(안 제6조)

마. 홍보단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바. 실무단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사. 수당(안 제9조)

아. 개인정보보호(안 제10조)

자. 시스템의 안전대책(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광양시 총무과(061-797-243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 제출서식 : 붙임 참고

나. 제출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총무과
- 전자우편 : rkgus2954@korea.kr
- 팩 스 : 061-797-2579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와 디지털 광양시민 간의 상생발전과 도농교류 촉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Digital)공간”이란 인터넷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상공간을 말한다.
2. “디지털 광양시민제도”라 함은 디지털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 동문, 친척, 인연,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고와 광양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디지털 광양시민으로 등록하고, 디지털 광양시민으로서 자격과 권리·의무를 가지며 도시와 농촌 간 생산적인 상생의 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3. “디지털 광양시민”이라 함은 광양시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광양시민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디지털 광양시민증”이라 함은 디지털 광양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5. “디지털 광양시민 약관”이라 함은 디지털 광양시민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 전 사전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디지털 광양시민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등록 해지 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제3조(자격) 디지털 광양시민(이하 “디지털시민”이라 한다)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외에 주소를 두며 시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 모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제4조(등록) 디지털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디지털시민 홈페이지의 등록절차에 따라 디지털시민의 약관에 동의 후 등록할 수 있다.

제5조(제도의 운영)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광양시민제도(이하 “디지털시민제도”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디지털시민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시민의 약관을 정하여 디지털시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디지털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시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2. 각종 웹 서비스 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시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
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디지털시민 확보 등을 위한 이벤트 행사 개최
6. 디지털시민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사항
7. 디지털시민 할인가맹점 확보 및 관리
8. 시와 디지털시민 간 또는 디지털시민 상호 간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9. 디지털시민을 대상으로 광양시 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혜택) ① 시장은 디지털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수여
2. 시 주관 문화공연·축제 등의 행사에 입장권 할인 및 버스투어 서비스
3. 시의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및 생산·판매자의 할인 쿠폰 제공
4. 시의 펜션, 민박, 농촌의 공가 등 정보 서비스 제공
5. 디지털시민제도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디지털시민에게 기념품 등 제공
6. 지역소식, 축제, 공연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상호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할인가맹점을 지정할 수 있다.

1.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2. 관내 관광 관련 민간시설(숙박·음식점·레저 등을 말한다)
3. 지역특산물 및 농수축산물 관련 온·오프라인 판매시설
4. 그 밖에 디지털시민의 이용수요가 높은 각종 유료시설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할인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할인가맹점 안내 및 홍보
2. 할인가맹점이 디지털시민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혜택
3.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시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디지털광양시민홍보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의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디지털 광양시민 홍보단(이하 “홍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단은 출향 향우를 포함해 시 밖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홍보단은 주요 시책 참여와 시 홍보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④ 시장은 홍보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설명회, 기념행사, 시책 홍보 등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홍보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디지털광양시민실무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디지털시민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광양시민 실무단(이하 “실무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단의 기능·구성 및 회의 등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수당) 시장은 홍보단 및 실무단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시민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스템의 안전대책) ① 시장은 인터넷 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시스템 안전대책 담당자를 디지털시민제도 업무 부서의 장으로 지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6. 2.

광 양 시 장

1. 공 고 내 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통지
2. 공 고 기 간 : 2023. 6. 2. ~ 2023. 6. 17. (15일)
3. 공 고 장 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관 련 법 규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 고 대 상

	대 지 위 치	존 치 기 간	건 축 주	건 축 주 주 소	반 송 사 유
1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261	2023. 6. 2.	박*규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촌길 ***-**	폐문부재
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414-13	2023. 6. 30.	주식회사 ****개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 4층	폐문부재

6. 기 타 사 항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허가 대상은 존치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존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고 대상은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만료일까지 연장신고 또는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불법건축물로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허가과(☎061-79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5.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7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15호

붙 임 :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으로,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를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주민세 재산분에”를 “주민세 사업소분에”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 <u>지방세징수법 시행령</u> 」(이하 “영”이라 한다), 「 <u>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u> 」(이하 “ <u>규칙</u> ”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 ----- <u>「지방세징수법 시행령」</u> ----- ----- ----- “ <u>시행규칙</u> ”----- ----- -----. -----.
제3조(채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채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채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 ----- ----- ----- ----- 주 <u>민세 사업소분에</u> ----- ----- ----- ----- -----. -----.

현행	개정안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공고)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u>법 제71조의2제1항</u>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이 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공고) ----- ----- ----- <u>법 제103조의3제1항</u> ----- ----- ----- ----- -----.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u>법 제71조의2제1항</u>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1.----- ----- <u>법 제103조의3제1항</u>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u>시행규칙 제52조의3</u> 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 ----- ----- ----- ----- <u>시행규칙 제73조의8</u> ----- ----- -----.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공고)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

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정수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시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 6명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 또는 선정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2.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전액 납부한 때로 한다.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3조의8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채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의 퇴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5.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23년 6월 7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16호

붙 임 :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 중 또는 처리 중에 있는 제증명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제3조제1항 관련)

종 목 (증 명)	기준	금액(원)	비고
1. 신상에 관한 증명			
(1) <삭제>	<삭제>	<삭제>	
(2) <삭제>	<삭제>	<삭제>	
(3) <삭제>	<삭제>	<삭제>	
(4) 채무자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복사	1통	1,000	
(5) <삭제>	<삭제>	<삭제>	
(6) <삭제>	<삭제>	<삭제>	
2.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1통	700	
(2) 중소기업자	1통	700	
(3) 광업, 공업, 상업	1통	700	
(4) 농가, 비농가	1통	1,000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1통	700	
(2) 생산실적	1통	700	
(3) 수출실적	1통	700	
(4) 납품실적	1통	700	
(5) 건물사용	1통	700	
(6) 공장원료 수요	1통	700	
(7) 분배농지 상환완료	1통	500	
(8)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1통	700	
(9) 시설보유 증명	1통	700	
(10) 공장등록 증명	1통	1,000	
(11) 부동산소유권사실 확인서	1통	500	
(12)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1통	500	
(13)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증명	1통	2,000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 농지	1통	300	
(2)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열람대장	1통	300	

종 목	기준	금액(원)	비고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	1필지	5,000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교부	1통	300	
(3)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1,000	
(4) 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3,000	
(5)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1필지	3,000	
(6) 표준주택 설계도면	1필지	3,000	사본첨부의 경우 700
(7)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1,200	
(8)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1,000	
(9)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1,200	
(10)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	
(11) 개별공시지가 열람	1필지	200	
(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	칼라발급의 경우 1,500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o 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	
7.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 공급실적) 증명	1통	500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1통	300	
(3) 원천징수공제증명	1통	500	
(4) 삭제(개정2013.2.8)	1통	500	
(5) 보상금 지불증명	1통	300	
(6) 면세용도 물품증명	1통	300	
8.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500	
(2)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	
(3)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	
9. 주민등록전입신고관련 증명			
o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	

종 목	기준	금액(원)	비고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명 재교부 신청	1건	500	
2. 산림관계			
o 개간허가증 교부	1건	2,000	
3. 농수산업 및 내수면 어업관계			
(1) <삭제>	<삭제>	<삭제>	
(2) 외국인에 대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	1건	2,000	
(3) 어업면허 신청	1건	5,000	
(4)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1건	3,000	
(5) 어업권이전, 분할, 변경인가 신청			
가. 어업권이전 인가신청,	1건	4,000	
나. 어업권분할 인가신청	1건	2,500	
다. 어업권변경 인가신청	1건	3,000	
(6)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신청	1건	1,000	
(7) 연안어업 허가신청	1건	2,500	
(8) <삭제>	<삭제>	<삭제>	
(9) 구획어업 허가신청	1건	4,000	
(10) 시험, 연구, 교습어업허가 또는 승인신청	1건	2,000	
(11)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	1건	2,000	
(12) <삭제>	<삭제>	<삭제>	
(13) 유료낚시터, 체험어장 지정신청	1건	2,500	
(14) 어장시설물철거 의무면제신청	1건	3,000	
(15) 유해어업의 사용 허가신청	1건	3,000	
(16) 어업권등의 보상청구신청	1건	2,000	
(17) 입어재결 신청	1건	3,000	
(18)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1건	3,000	
(19) 포획, 채취금지해제 허가 신청	1건	4,000	
(20)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종 목	기준	금액(원)	비고
(21)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22) 어장도로를 제외한 어업권 원부의 초본교부신청	1건	500	
(23) 어장도의 교부신청	1건	500	
(24) 내수면 어업면허신청	1건	6,000	
(25) 내수면 어업허가신청	1건	4,000	
(26) 내수면 면허기간연장 허가 신청	1건	4,000	
(27)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1건	1,000	
(28)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	
(29)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신청	1건	4,000	
(30)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 변경 허가신청	1건	1,500	
(31)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 변경 신고	1건	1,500	
(32)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 폐업 신고	1건	800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사설시장 개설 및 갱신허가	1건	1,000	
(2) 사설시장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1건	500	
(3)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건	1,000	
(4)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	
(5)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	
(6) 석유판매업(일반, 항공유, 특수판매소 신고)	1건	10,000	
5. 건설관계			
(1)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단,천만원미만건 당10,000	
(2) 하천 채식(벌채) 및 지하수 채취허가 신청	1건	1,000	
(3)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1,000	
(4)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500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척당	900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	
(5)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1,000	
(6)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1,000	

종 목	기준	금액(원)	비고
(7)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1,200	
(8) 토지사용 승낙서	1건	500	
(9)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1,200	
(10) 체비지 소요자 확인서	1건	1,200	
(11)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00	
6. 보건사회관계			
(1)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o 신규신고	1건	40,000	
o 변경신고(이전)	1건	20,000	
(2) 의료기관 개설신고(의원급, 조산소)			
o 신규신고	1건	40,000	
o 변경신고(이전)	1건	20,000	
(3) 의료기관 및 약품판매업소 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0	
(4) 묘지 개장 허가신청	1건	2,000	
(5) 안경업소개설등록	1건	10,000	
(6) 안마시술소개설			
o 신규신고	1건	40,000	
o 신고사항변경신고	1건	20,000	
(7)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1건	10,000	
(8) 안경업소 양도·양수	1건	10,000	
(9)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1건	10,000	
7. 문화홍보관계			
(1) 공연장 등록 신청	1건	10,000	
(2) 공연장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3) 유원시설영업허가(신고) 및 변경허가 신고			
가. 유원시설업(종합, 일반) 허가			
o 신규허가	1건	50,000	
o 허가사항변경 허가	1건	20,000	
나.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o 신규신고	1건	25,000	
o 허가사항변경 허가	1건	10,000	
(4) 체육시설업			
o 신규신고	1건	30,000	
o 변경신고		10,000	
(5) 유통관련업등록(신고) 신청	1건	20,000	
(6) 유통관련업등록(신고)사항변경 신청	1건	5,000	

종 목	기 준	금액(원)	비 고
8. 부동산중개업관계			
(1) 법인사무소 개설등록	1건	30,000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1건	20,000	
(3) 등록증재교부 신청	1건	800	
(4) 중개법인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	
(5)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	
(6)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800	
(7)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1건	800	
(8) <삭제>	<삭제>	<삭제>	
9. 환경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	
(3) <삭제>	<삭제>	<삭제>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요율표(제3조제2항 관련)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삭제> ※ 매체비용은 별도

<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 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제3조제1항 관련)			
종 목	기준	금액(원)	비고	종 목	기준	금액(원)	비고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신규	1건	5,000		○ 삭제	삭제	삭제	
○ 변경(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		○ 삭제	삭제	삭제	
3. 농수산업 및 내수면 어업관계				3. 농수산업 및 내수면 어업관계			
(3) 어업면허 신청	1건	4,000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000	
(8) 해상종묘 생산어업 허가신청	1건	4,000		(8) 삭제	삭제	삭제	
<신 설>				(28)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	
				(29)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신청	1건	4,000	
				(30)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 변경 허가신청	1건	1,500	
				(31)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 변경 신고	1건	1,500	
				(32)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 폐업 신고	1건	800	
6. 보건사회관계				6. 보건사회관계			
(2) 의료기관 개설신고(의원급, 조산소)				(2) 의료기관 개설신고(의원급, 조산소)			
○ 변경신고(명칭, 구조, 이전 등)	1건	20,000		○ 변경신고(이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환경관계				9. 환경관계			
(3)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5,000		(3) 삭제	삭제	삭제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요율표(제3조제2항 관련)

공개대상		
전자파일	생략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u>변환이 필요하지 않는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u> - 무료 ※ 매체비용 별도 • 전자파일로의 <u>변환</u>(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u>5,000원</u> - <u>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u> ※ 매체비용은 별도

1. ----- 전자파일 복제 -----
-----.
2. 생략
3. 생략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요율표(제3조제2항 관련)

공개대상		
전자파일	현행과 같음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u>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전자파일로의 <u>변환 등</u>(문서·도면·사진 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u>1GB마다 800원</u> - <u>삭제</u> ※ 현행과 같음

1. -----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 -----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광양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5.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7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17호

붙 임 :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7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광양시”를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단서 중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6조제2항제4호”를 “법 제16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와 제3호의 “토지”와 “대장가액 2천만원”을 각각 “토지의 취득·처분”과 “기준가격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5조제1항 중 “사용·수익 허가대상”을 “사용허가대상”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중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2. 사용허가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와 제22조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7조제4항제1호 중 “실경작자”를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법 제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을 따른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제32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8조제1항제23호 및 제25호, 제28호”를 “영 제38조제1항제23호 및 제28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10조의3-----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학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 또는 공인중개사·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 ----- ----- ----- ----- -----.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심의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	⑨ ----- ----- -----

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⑩・⑪ (생략)

⑫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광양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의회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생략)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

-----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

⑩・⑪ (현행과 같음)

⑫ -----

-----.
--- 시 -----

-----.

제4조(심의회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

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4.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광양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삭제>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② (생략)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u>사용·수익 허가대상</u>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생략) 제18조(<u>사용·수익허가의 제한</u>) ① (생략)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u>사용·수익허가</u>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제18조의2(수익의 방법으로 <u>사용</u>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 ----- <u>사용허가대상</u> -----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u>사용허가의 제한</u>)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사용허가</u>----- 1. · 2.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수익의 방법으로 <u>사용</u>

·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 · 제18호 · 제24호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u>사용 · 수익 허가</u>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제19조(<u>사용 · 수익허가</u>)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u>사용 · 수익허가</u>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u>사용 · 수익허가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u> 2. <u>사용 · 수익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u> 3. <u>사용 · 수익허가 기간 및 사용료</u> 4. (생략) 5. <u>사용 · 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u> 6. <u>사용 · 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u> 7. (생략) 제20조(<u>사용 · 수익허가부의 비</u>	허가할 수 있는 경우) ----- ----- ----- --- <u>사용허가</u>----- -----. 1. ~ 4. (현행과 같음) 제19조(<u>사용허가</u>) ----- ----- <u>사용허가</u>----- -----. 1. <u>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u> 2. <u>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u> 3. <u>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u> 4. (현행과 같음) 5. <u>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u> 6. <u>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u> 7. (현행과 같음) 제20조(<u>사용허가부의 비치</u>) ----
--	---

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
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
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생략)

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
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 5. (생략)

② ~ ⑥ (생략)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
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
를 준용한다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
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사용허가부-----

-----.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현행과 같음)

1. ----- 사용허가-----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
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를 준
용한다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농업인-----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
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
하는 경우

3. ~ 7. (생략)

⑤·⑥ (생략)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
산평가액은 건물 및 부지 평가
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
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
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
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
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
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
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
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
의 2

<삭 제>

3. ~ 7.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

물의 대부료 산출은 법 제94조
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을
따른다.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영 제35조에 따라 영 제29조 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신 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 사용허가-----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허가 및 대부) ① -----

-----사용허가-----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용허가-----

-----.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

-----사용허가-----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 제23호 및 제25호, 제28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략) 1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u>사용·수익허가</u>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12. ~ 15.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 제23호 및 제28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현행과 같음) 1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u>사용허가</u>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12. ~ 15. (현행과 같음)
---	--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양시 공유재산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광양시 재정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의 3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학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 또는 공인중개사·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

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소집 3일 전에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 민간인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난상황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간사는 업무 담당 주사로 하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 내용을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 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⑪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⑫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4. 행정재산 관리위탁 및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다만, 일반입찰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사용 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되거나, 토지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할 수 없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 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

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행정재산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 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

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8조의2(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 제8호·제18호·제24호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이 사유 토지와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4. 행정재산을 사유 토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제19조(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및 사용 목적
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
4. 사용료 납부 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 조건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 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주소 및 성명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 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21조에 따라 관리수탁자에게 위탁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위탁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는 제2항 위탁료의 1.5배 이내에서 정하고 관리비용은 실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법 제27조제6항 규정에 의한 이용료 수입 일부를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1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의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관리위탁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용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종전의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 여부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요율, 일시 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써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하였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

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 변경 때문에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축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할 때.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시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시로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시 관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7. 「광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연간 대부분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 제>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를 산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③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법 제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을 따른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
 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
 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영 제3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⑥ 영 제17조제6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감경할 수 있다.

⑧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 목적을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시장이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삭제>

제32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로 한다.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당해 연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100을 감액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 월, 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 기간
5. 재산 가격
6. 대부 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 기일
9. 계약 갱신 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2절 매각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 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삭제>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매각 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부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11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또는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및 제28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써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 또는 시 소유의 토지에 가로막힌 사유 토지의 진·출입을 위해 공공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진·출입로 확보에 따른 최소의 면적을 당해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 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5.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마을회에 매각하는 경우

6. 재산의 위치, 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서는 이용 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 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동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7.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8. 시가 천재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

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

9.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입목 또는 건축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입목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12. 제25조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14.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매립면허 등을 받아 매립공사 중 준공이 안 된 토지를 포함한다) 원상회복 의무 면제 후 국가 귀속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된 재산을 매립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다만, 공공시설 편입부지는 제외한다.)
15. 시유건물(건물부지를 포함한다)을 주거용으로 대부받아 직접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절 신탁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1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립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분수립의 설정) <삭제>

제6장 청사관리

제44조(청사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사업소·읍·면·동장은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 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도피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삭제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 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 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48조(정의)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시장 관사
2. 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시설관리사, 기타 관사 등

제49조의2(관사의 면적) 1급 및 2급 관사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면적 이하로 한다.

1. 단독주택 : 213제곱미터(연면적)

2. 아파트 : 85제곱미터(전용면적)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청결 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 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2급 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및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 유지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5. 공공요금(전기, 전화, 수도요금)
6. 아파트형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4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인계인수 등) ① 제53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관사담당 공무원 등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

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8조(변상조치) 사용자의 과실로 관사의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9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변상금의 잔액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인다.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61조의3(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법 제82조 및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재산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법 제92조에 의한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한 공개는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 1회 공개한다.

제63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제65조(준용) 삭제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5.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7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18호

붙임 : 광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동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 ② 민원실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호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5.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배알도
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7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19호

붙임 : 광양시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양시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광양시 배알도근린공원 내”를 “광양시에서 설치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되는 광양시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양시 태인동 1630-12번지 일원에 위치한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2. 광양시 다압면 1548-1번지 일원에 위치한 “금천계곡 야영장”

제5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미리 야영장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그 사유와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이용료 산정기준을”을 “시설이용료를”로 한다.

- ① 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제목 “관리 및 위탁”을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다만,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관리위탁 등) 시장이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3. 2회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시장은 시설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
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해 시설물이 조성된 해당마을이나
마을단체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제11조와 제12조를 각각 제13조와 제14조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시설의 관리 부서 지정)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은 시설 조성 부
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3조) 중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하고, 제14조를 제17조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이용료 (제6조제1항 관련)

1.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단위: 원)

시설명	데크규격	이용료(1박)		이용시간	비고
		비수기	성수기, 주말		
자동차 야영장	4*4m	20,000	25,000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1. 비수기 : 성수기, 주말을 제외한 기간
	5*6m	30,000	35,000		2. 성수기 : 7월15일부터 8월24까지
전기이용료		3,000			

2. 금천계곡 야영장

(단위: 원)

시설명	데크규격	이용료(1박)		이용시간	비 고
		비수기	성수기, 주말		
자동차 야영장	5*8m	35,000	40,000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1. 비수기 : 성수기, 주말을 제외한 기간
전기이용료		3,000			2. 성수기 : 7월15일부터 8월24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별표 2]

시설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7조제1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 국가 또는 광양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액
-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 19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족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진흥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30 감액

이용자 준수사항(제9조제4항 관련)

이곳 000 야영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이용자 한 분 한 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1. 입장 및 퇴장

-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야영장 이용자 수칙 미준수 및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 시에는 강제 퇴장 조치 됩니다.
- 야영장의 이용시간은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이며, 야영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시설이용료

- 시설이용료는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며, 이용료는 선불입니다.

3. 장 소

- 이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시설 외에는 그늘막 및 텐트 이용을 금합니다.

4. 차량이용

-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3:00부터 07:00까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 내 차량통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이용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 소음이 심하지 않게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앰프(노래방 기기) 이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 정숙 시간은 22: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생

-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이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7. 동물

- 모든 동물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며 항상 사람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합니다.
- 동물의 오물 등으로 야영장을 더럽혀서는 안되며,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 야영장 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이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이용하고 남은 숯은 반드시 잔불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이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야영장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전기시설

-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구 이용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과도한 전기 이용으로 인하여 야영장 전체의 전기가 다운될 염려가 있으므로 부득이 이용에 제한을 두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광양시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광양시 배알도근린공원 내 야영장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위치) <u>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태인동 1630-12번지 일원에 둔다.</u> 제5조(시설 이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u>이 경우 미리 야영장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제한 사유</u>	<u>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 <u>광양시에서 설치한-----</u> -----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되는 <u>광양시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광양시 태인동 1630-12번지 일원에 위치한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u> 2. <u>광양시 다압면 1548-1번지 일원에 위치한 “금천계곡 야영장”</u> 제5조(시설 이용의 제한) ①----- ----- ----- -----<u>.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그 사유와 내용을 알려야 한다.</u>

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
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시설이용료) ① 시설이용
료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
에 따른다.

② 관리자는 시설이용료 산정
기준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야영장 내에 게시하여
야 한다.

제10조(관리 및 위탁) ① 야영장
은 시장이 관리하고 운영한다.
다만,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
탁 또는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사
용·수익허가 한 경우 야영장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이용료) ① 시설이용
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 시설이용료를-----

-----.

제10조(관리) ① -----
-----.다만, 야영
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사
용허가-----

-----.

③ (생 략)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리위탁 등) 시장이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

<신 설>

상황지역 사업으로 조성
된 시설물을 해당 마을법
인이나 마을단체에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3. 2회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
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시장은 시설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일
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
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
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을 허
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
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

	<u>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u> 다.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u>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u>」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 <u>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u> 4. 그 밖에 시설물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해 시설물이 조성된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제11조(수탁자의 관리의무 등) ①~⑤ (생략)	제13조(수탁자의 관리의무 등) ①~⑤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지도·감독) ①~③ (생략)	제14조(지도·감독) ①~③ (현행 제12조와 같음)
<신설>	제15조(시설의 관리 부서 지정)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은 시설 조성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생략)

[별표 1]

시설이용료(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시설명	데크 규격	이용료 (1박)		이용 시간	비 고
		비수 기	성수 기, 주말		
자동차 야영장	4*4m	20,000	25,000	14:00 ~ 마 지 막 사 용 일 11:00	1. 비수기 : 성수기,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15일부터 8월 24까지 3. 주 말 :금·토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5*6m	30,000	35,000		
전기이용료		3,000			

원칙으로 한다.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

제17조(시행규칙) (현행 제14조와 같음)

[별표 1]

시설이용료(제6조제1항 관련)

1.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단위: 원)

-----	---	-----		-----	-----
		-----	---		
-----	-----	-----	-----	-----	-----
	-----	-----	-----		-----
-----		-----		-----	

2. 금천계곡 야영장

(단위: 원)

시설명	데크 규격	이용료 (1박)		이용 시간	비 고
		비수 기	성수 기, 주말		
자동차 야영장	5*8m	35.0 00	40.0 00	14: 00 ~ 마 지 막 사 용 일 11: 00	1. 비수기 : 성수기, 주 말을 제외 한 기간 2. 성수기 : 7월15일부 터 8월24 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 일 및 공휴 일
전기이용료		3,000			

[별표 2]

시설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7조제1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 광양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액
-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100 분의 30 감액
- 19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족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별표 2]

시설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7조제1항 관련)

-----	---
- 국가 또는 -----	----
-----	----

--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포로가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진흥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4]

이용자 준수사항(제9조제4항 관련)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이용
자 한 분 한 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장 및 퇴장

-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야영장은 야영 시에 강제 퇴장조치 될 수 있다.
- 야영장의 이용시간은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이며 야영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시설이용료

- 0 시설이용료는 이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별표 4]

이용자 준수사항(제9조제4항 관련)

이곳 000-----
----- 바랍니다.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
며, 이용료는-----,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설치한 야영장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되는 광양시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양시 태인동 1630-12번지 일원에 위치한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2. 광양시 다압면 1548-1번지 일원에 위치한 “금천계곡 야영장”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야영데크,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야영장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야영장을 관리·운영하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약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이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시설 이용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설이용료는 온라인 결제하거나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시설 이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그 사유와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2.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료를 감면받거나 무단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9조제4항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6조(시설이용료) ① 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리자는 시설이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야영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이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하며, 감면사항 중복 발생 시에는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제8조(시설이용료 배상·반환) ① 관리자는 납부된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및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시설이용료 전액 반환

2. 관리자 또는 이용자 귀책 사유로 이용을 취소한 경우: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 및 반환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배상 및 반환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의 책임 등) ①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야영장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

③ 이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이용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④ 이용자는 별표 4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0조(관리 및 위탁) ① 야영장은 시장이 관리하고 운영한다. 다만,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 야영장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야영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관리위탁 등) 시장이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 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3. 2회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시장은 시설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

3.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해 시설물이 조성된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제13조(수탁자의 관리의무 등)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시설이용료는 이 조례에 따르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양여·교환하거나 대여 등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할 수 없을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의 관리 부서 지정)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은 시설 조성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5.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7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20호

붙임 : 광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광양시민의 신체와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붙일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안전교육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시장은 화재로부터 광양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장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시책을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5.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23년 6월 7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21호

붙 임 : 광양시 침수 방z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광양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지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

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ز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해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광양시 공보 및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사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사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5.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7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22호

붙 임 : 광양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

광양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연 1회에 한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 ①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접종기록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5.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7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23호

붙 임 :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과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 법인·영업자 단체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5. “먹거리타운 또는 특화거리”란 자연적으로 밀집 형성되어 특색 있는 거리가 되었거나,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위생업소
2. 위생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물품 지원
2. 신메뉴 개발·보급, 경영 컨설팅, 음식 관광 홍보, 마케팅
3. 관광 및 대표 음식 발굴·개발·육성
4. 먹거리 타운 또는 특화 거리 지정·육성
5. 위생 관련 대회, 축제, 행사개최 및 참가 지원, 선진지 견학 및 공동 브랜드 육성
6. 위생업소 위생등급·모범업소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우수업소 지원
7.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업소 참여 확산
8.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 방역시설·물품 지원
9.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한 등) 시장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정산에 관한 사항

3. 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시장은 시의 위생업무 담당 소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 의원

2. 식품 분야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중위생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59조

와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단체의 장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시의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광양시 각종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양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7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칙 제911호

붙 임 :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결손처리”를 “시효완성정리”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정리보류 등)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1호 서식의 정리보류표(갑, 을), 제9-2호 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제15조의 제목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으로,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으로 한다.

제21조 중 “영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영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5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 “제9호”를 “제9-1호”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서식 제9-2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 제10호, 제11호, 제13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 통지 제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목	세액				
		가산세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				
납세인원		시(도) 구(시·군) 번길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내역서

[illegible]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m²)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부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하 발의일 : 년 월 일

엿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입징수관 (인)

세 목 []세 / 세목구분 [] / 시·군 []

[illegible]

■ [별지 제4호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주민(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수납구분				
			부과금액	감액/정리보류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 제5호서식]

징수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illegible]

297mm×210mm(백상지 80g/㎡)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 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정 리 보 류 표

[illegible]

시효 완성 정리표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정리보류여부
		본세	가산금	계	
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인) 전라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불임 : 증명서류 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	------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을 이용한 매각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 제1호 및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광 양 시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채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채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채납처분비				
합계				

끝.

광 양 시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생략)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u>결손처리</u> 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제13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시효완성정리</u> ----- ----- -----.
제14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u>결손결정결의서</u> 및 별지 제9호서식의 <u>결손처분표</u> (갑, 을)에 따른다.	제14조(정리보류 등)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u>결정결의서</u> 및 별지 제9-1호 서식의 <u>정리보류표</u> (갑, 을), 제9-2호 서식의 <u>시효완성정리표</u> 에 따른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u>결손처분</u>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u>결손처분</u> 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u>결손처분</u>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u>정리보류</u> 취소 시 이월액 정리) ----- ----- <u>정리보류</u> 를 ----- ----- <u>정리보류</u> ----- ----- ----- ----- -----.
제16조(<u>결손처분</u> 의 사후관리) <u>결손처분</u> 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제16조(<u>정리보류</u> 의 사후관리) <u>정리보류</u> 를 -----

현행	개정안
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u>결손처분을</u> 취소하고 압류 등 <u>채납처분을</u> 속행하여야 한다. 제21조(압류재산의 인수·인계서) <u>영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에</u> 따른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3호 서식과 같다.	----- ----- ----- <u>정리보류를</u>----- -----. 제21조(압류재산의 인수·인계서) <u>영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u>----- ----- -----.